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요강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전 교육과정 이수자)

※ 변경사항 발생 시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하므로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최신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5.05.30.>



목 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기준	3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2. 전형일정	6
3. 원서접수 안내	7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8
5. 지원자격	9
6. 제출서류	12
7. 전형방법	15
8. 전형기준	16
9. 전형료	16
[별첨1]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	17
[별첨2] 학업능력 입증서류 건본양식	18
[별첨3] 사유서 건본양식	19
찾아오시는 길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기준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지원자격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방학을 포함하고 소수점은 절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 열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재외국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북한이탈주민 (정원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정원외)
인 문 계	문과	한국어문학부		51	5		
		역사문화학과		26	2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3	2		
		중어중문학부		59	5		
		독일언어·문화학과		20	2		
		일본학과		28	2		
		문헌정보학과		21	2		
		문화관광외식학부	문화관광학전공	28	2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28	2		
	교육학부		48	1	-	-	
	생활 과학	가족자원경영학과		20	2		
		아동복지학부		40	4		
	사회 과학	정치외교학과		26	2		
		행정학과		24	2		
		홍보광고학과		36	3		
		소비자경제학과		20	2		
		사회심리학과		20	2		
	법과	법학부		81	8		
	경상	경제학부		55	5		
		경영학부		106	10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17	1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5	1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60	6		
			테슬(TESL)전공	17	1		
	미디어학부			42	4		
인문계 소계				911	34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 연 계	이과	화학과		32	3		
		생명시스템학부		39	3		
		수학과		28	2		
		통계학과		33	3		
	공과	화공생명공학부		51	5		
		인공지능공학부		49	4		
		지능형전자시스템학부		35	3		
		신소재물리학부		28	2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과학전공	42	4		
			데이터사이언스전공	28	2		
		기계시스템학부		40	4		
		첨단공학부		78	-		
	생활 과학	의류학과		25	2		
		식품영양학과		32	3		
	약학	약학부		80	-	-	3
자연계 소계				620	6	제한없음	제한없음
순헌칼리지	자유전공학부			293	-		
순헌칼리지 소계				293	-	제한없음	제한없음

계 열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재외국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북한이탈주민 (정원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정원외)
예 · 체 능 계	이과	체육교육과		26	-	-	-
		무용과	한국무용	33	3		
			발레				
			현대무용				
	음악	피아노과		32	3		
		관현악과		36	3		
		성악과		26	2		
		작곡과		25	2		
	미술	시각·영상디자인과		34	3		
		산업디자인과		27	2		
		환경디자인과		26	2		
		공예과		34	3		
		회화과	한국화	27	2		
			서양화				
예·체능계 소계				326	3	제한없음	제한없음
모집인원 계				2,150	43	제한없음	제한없음

가. 재외국민의 모집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정원 내)의 2%인 43명이고, 모집단위별 최대 선발가능인원은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교육학부는 1명 이내)로 하며, 계열별 최대 선발 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북한이탈주민은 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 가능합니다.

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약학부 3명, 다른 모집단위는 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합니다.

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제변동, 입학정원 조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관현악과에 지원 가능한 전공악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바이올린	플루트	색소폰	베이스트롬본
비올라	오보에	호른	타악기
첼로	클라리넷	트럼펫	
콘트라베이스	바순	트롬본	

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팀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합니다.

(<https://e.sookmyung.ac.kr/en/admission/undergraduate.do>, +82-2-710-9813)

사. '-'로 표시되어 있는 해당 모집단위에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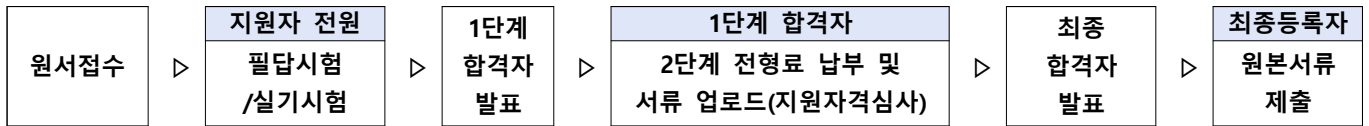
아.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한국어문학부	가족자원경영학과	화학과	피아노과
역사문화학과	아동복지학부(유치원정교사)	생명시스템학부	관현악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정치외교학과	수학과	성악과
중어중문학부	경제학부	신소재물리학부	작곡과
독일언어문화학과	경영학부	컴퓨터과학전공	-
일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의류학과	-
문헌정보학과(사서교사)	테슬(TESL)전공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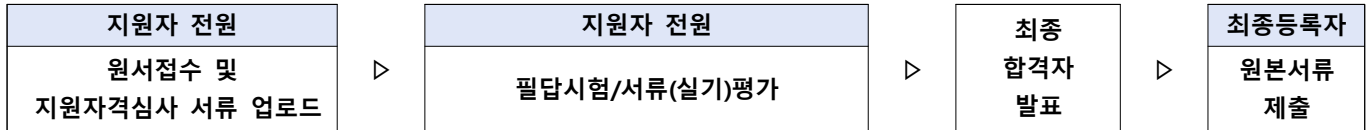
※ 교원양성센터 : <http://teaching.sookmyung.ac.kr>, 02-710-9027, 02-2077-7352

2. 전형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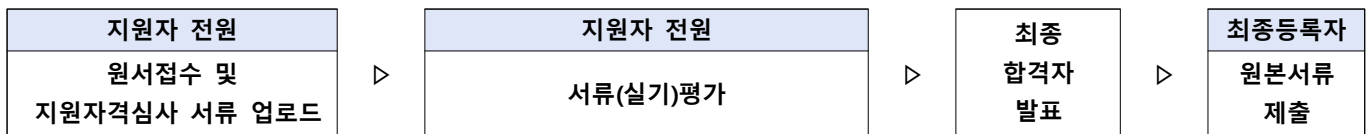
▶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구분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비고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7. 8.(화) 10:00 ~ 7. 10.(목) 17:00			· 입학처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격심사 서류 업로드	-	7. 8.(화) 10:00 ~ 7. 11.(금) 17:00		· 원서접수 시 PDF 파일로 업로드 (p.12 제출서류 참고) · 방문제출 불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7. 16.(수) 17:00	-		· 시험시간 및 장소 안내 · 입학처 홈페이지
필답 및 실기시험	7. 23.(수)			· 해당 시험장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1단계 합격자 발표	7. 30.(수) 17:00	-		
2단계 전형료 납부	7. 30.(수) 17:00 ~ 7. 31.(목) 17:00	-		
재외국민 지원자격심사 서류 업로드	7. 30.(수) 17:00 ~ 8.1.(금) 17:00	-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p.12 제출서류 참고) · 방문제출 불가
합격자 발표	9. 4.(목) 17:00			· 입학처 홈페이지
문서등록	12. 15.(월) ~ 12. 17.(수) 16:00까지			· 온라인 문서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12. 18.(목) ~ 12. 23.(화) 18:00까지			·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충원합격자 문서등록	12. 18.(목) ~ 12. 24.(수) 16:00까지			· 온라인 문서등록
본 등록 및 원본서류 제출	2026. 2. 3.(화) ~ 2. 5.(목) 16:00			· 신한은행 및 전국은행 · 원본서류는 최종 등록자에 한하여 제출 · 원본서류 제출: 입학정보센터 ·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위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이며,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미등록으로 인한 충원을 실시하지 않음. 단, 전 교육과정 이수자 모집단위 중 약학부에서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하여 모집인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동일 모집단위에서 일정 인원의 충원을 실시함

※ 연락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전화번호를 반드시 바르게 입력하여야 함

※ 최종 등록자는 원본서류(국외발급 학적서류 및 재직서류의 경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관련 서류의 경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불필요)를 우리 대학 입학정보센터로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여야 함

3. 원서접수 안내

※ 우리 대학은 원서접수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 처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입학 후 학력조회 및 자격조회, 우리 대학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제3자 개인정보 제공 포함), 도서관 이용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므로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교내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원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사진, 계좌정보)

※ 원서 사진은 수험표, 합격 후 학적부 등재, 학생증 발급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② 지원자 연락처, 주소, 이메일, 추가연락처, 학력 사항(출신학교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재학기간)

※ 연락처는 충원합격 통보 등에 사용되므로 전형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학력 사항(출신학교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재학기간) 입력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 추후 최종합격자의 학력조회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신학교와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입력사항 착오,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보호자 국적, 근무처, 근무(영주, 거주)기간

다.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결제 후에는 모집단위를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복수지원 관련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통」

①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재외국민 포함)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우리 대학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 간 중복지원을 허용함

②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마. 지원자격심사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바. 지원자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함께 주민등록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이전),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아. 실기시험(무용과, 음악대학) 평가과정은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녹음 또는 녹화할 예정이며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 가. 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단, 총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는 전화로 합격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총원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3회 통화 시도 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총원합격 통보 일정 및 방식(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또는 개별 통보)은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ission.sookmyung.ac.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나.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수험생은 부여받은 순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다.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또는 여러 전형에 중복하여 최종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반드시 1개의 대학 또는 1개의 전형에만 등록(문서등록 포함)해야 합니다.
- 라. 다른 대학에서 총원합격 통보를 받아 해당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마.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 관련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통」
- 1)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총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 2)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 관련 사항이나 양식은 해당 시기에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 바.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해당 기간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고, 본 등록 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 등록(문서등록 포함)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우리 대학의 학칙 및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 아. 합격 후 최종등록자는 원본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자. 신체검사는 본 등록까지 마친 최종등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타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자로 판정 받은 자는 입학 후 대학에서 휴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차. 지원자가 제출한 입학원서 등 각종 제출서류가 허위 기재, 표절, 대필,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를 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지원 자격

가. 공통 학력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나. 전형별 자격 및 학력요건

전형구분	자격요건	학력요건
재외국민	국외근무자의 자녀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글로벌서비스학부는 공인영어시험성적 TOEFL PBT 550, IBT 80, IELTS 5.5, TOEIC 750, TEPS 550 이상인 자(2023년 12월 1일 이후 시행하여 원서접수 시 성적표를 제출 가능한 취득 성적만 인정). ※약학부는 공인영어시험성적표 필수제출(2023년 12월 1일 이후 시행하여 원서접수 시 성적표를 제출 가능한 취득 성적만 인정. p.13 표 중 공인영어시험성적 참고)

※ 종교인은 재단을 통해 파송된 경우에만 국외근무자로 인정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휴교,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학, 체류가 어려운 경우 별첨3의 사유서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국외 재학기간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3)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적용).

-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5)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 학 기 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지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지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 학 기 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지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중복지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라. 국외체류일수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 두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이혼 전까지는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재학·체류기간
- 이혼 후에는 친권자(친부 또는 친모) 및 계부 또는 계모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재학·체류기간

4)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함

5)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

마.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외 거주 및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 1) 국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국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단, 국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제가 동일하지 않은 2개 학교 이상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이수해야 함
- 2)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바. 학교 인정 기준

- 1)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 2) 외국학교의 형태는 해당국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초등·중등·고등·대학교의 정규 학교만을 인정하고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외국 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 4)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전형유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11학년제 이하에서 고등과정을 이수한 경우, 12학년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사. 이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대학이 정하는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제출서류

※ 업로드 및 추후 원본 제출 시 반드시 '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하기 바람

제출 서류 순서	자격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비 고
				재외 국민	외국인	결혼 이주민	
1	지원자격심사 신청서	○	○	○	○	○	원서접수 후 출력가능
2	국내외 ① 초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② 중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졸업(예정)증명서 ④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재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	○	○	*사본 업로드 가능 (최종등록시 원본 제출)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는 학 교생활기록부 제출 *외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해당국 영사확인서 포함(학 사일정표 제외)
3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부/모 (각 1부)					*학생/부/모 각각 기준으로 1부 씩 제출(최종등록시 원본제출)
4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부/모 (각 1부)		○	○	○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 증명 발급하여 제출 (제출한 증명서는 추후 정부24 사이트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 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 확 인 예정. 최종등록시 원본제출) *2025년 5월 발급분부터 인정
5	여권사본	○ 학생/부/모 (각 1부)		○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학생/부/모 (각 1부)		○			*학생/부/모 각각 기준으로 1부 씩 제출(최종등록시 원본제출)
7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					*p.13 표 참고
8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거주지 구청 발급
9	학력확인서		○				
10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사본 제출 가능(최종등록시 원본 제출)
11	외국국적 증명서(시민권사본)				○		
12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				○		
13	공인영어시험성적표			○	○	○	*글로벌서비스학부, 약학부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14	학업능력 입증서류 (표지 필수 첨부)		희망자	희망자	희망자	희망자	*예체능계 지원자 제외
15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 학생/부/모 (각 1부)		○	○	○	*입학처 홈페이지 재외국민 서식 파일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을 위해 반드시 정부24(gov.kr)에서 증명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는 지원자격심사 서류제출기간 7.8.(화)~11.(금)에 맞춰 서류 업로드 해야 함
재외국민 지원자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해 7.30.(수)~8.1.(금)에 맞춰 서류 업로드 함

※ 최종등록 후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원서접수 시
업로드한 파일과 상이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 1)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재직(경력)증명서
- 2) 상사직원 :
 - ① 재직(경력)증명서(외국근무기간, 근무국가 명 필히 명기)
 - ② 외국환은행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해외지사설치(변경/폐지)신고(수리)서 중 택 1
- 3)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 ① 재직(경력)증명서
 - ② 정부초청 또는 추천 확인서
- 4) 현지법인 근무자 :
 - ①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필히 명기)
 - ② 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③ 법인세금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세금납입증명서
- 5) 현지 자영업자 :
 - ① 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② 국외세금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 6) 종교인 :
 - ① 재직(경력)증명서(외국근무기간, 근무국가 명 필히 명기)
 - ② 파송증명서 (※재단을 통해 파송된 자에 한함)

학업능력 입증서류

- ※ 학업능력 입증서류: 본인의 역량 및 학업 등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에 관한 기재내용 보완·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AP/IB/SAT성적, 교외 수상실적, 공인외국어시험성적 등을 포함한 교내·외 활동을 모두 작성할 수 있음.
- ※ 제출방법: 지원자의 입장에서 중요도 순서대로 정리하여 21매(최대 10개 항목, 표지 1매, 단면 20매; 총 21매) 이내의 PDF 파일로 작성. 해당 파일을 **원서접수 시 업로드**. 최종등록자는 반드시 업로드 파일과 일치하는 원본 서류 제출. 초과분량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편집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우편제출 시 A4용지 규격(표지 1매 포함 단면 총 21매 이내)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 제본이나 USB, CD 등 비문서 형태 자료 제출 불가
- ※ 학업능력 입증서류(예시)
- 추가학력 입증서류: IB, AP, SAT, ACT, A-Level 등
 - 교내·외 기타활동서류: 수상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 공인영어시험성적 증빙서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영어(TOEFL, TOEIC, TEPS, IELT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등
- ※ 공인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위여부 확인수단/정보(확인가능 사이트 주소, ID 및 패스워드 등)를 해당 입증서류의 목록에 필히 기재해야 함. **진위여부 확인수단 미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빙으로 제출하는 성적 증명서 상에 직접 자필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 A-Level, IELTS, 해외기관 토익 등 온라인 성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 혹은 발급기관이나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며, 합격 및 최종 등록 후 최종등록자 원본서류 제출기간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 작성 내용은 고교 재학기간 내 활동과 경험으로 작성 (이외 활동 및 경험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1)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발급.
- 2) 온라인 발급은 재외국민 민원포탈(영사민원24 - g4k.go.kr)에서 가능.

공인영어시험성적(글로벌서비스학부, 약학부 지원자에 해당)

- ※ 공인영어시험성적 증빙서류: TOEFL, TOEIC, IELTS, TEPS
- ※ 공인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위여부 확인수단/정보(확인가능 사이트 주소, ID 및 패스워드 등)를 원서접수 시 필히 기재해야 함. **진위여부 확인수단 미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 원본 혹은 발급기관 등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을 업로드하며, 최종등록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모든 서류는 업로드 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등록자는 본 등록 및 원본서류 제출 기간에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본 등록 기간 내에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예정시점까지 적용해야 지원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 후 지원자격 관련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원본/사본 여부는 지원자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②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2025. 7. 8.)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5. 4. 9. 이후)에 발행한 것만 인정합니다. 단, 기졸업자는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원 자격심사 서류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판장이 발행한 동일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⑤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①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지원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부모의 사망	①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②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⑥ 국외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 안내 0404.go.kr)

-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 재외 한국학교(별첨1) 출신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나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5. 3. 30. 현재)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⑦ 국외 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표 관련하여, 재학한 사실이 있는 모든 국외 학교와 학년에 대해 재학 당시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 방학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학사일정표를 제출합니다(인터넷 출력물 또는 캡처 화면 인정하나,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되어야 함).
- ⑧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언어는 반드시 영문 또는 국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언어를 영문이나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할 경우 번역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단, 학사일정표는 번역공증이 불필요하며, 학기개시 및 종료일, 공휴일 등을 번역하여 제출합니다).
- ⑨ 최종등록자에 대하여 추후 학력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⑩ 서류제출의 의무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모집요강 등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7. 전형방법

가. 시험과목 및 반영비율

구 분		국어	영어	수학	실기	합계
재외국민	인문계	50	50	-	-	100
	자연계	50	-	50	-	100
	예·체능계	40	-	-	60	100

- ▷ 1단계 필답시험(실기시험) 성적으로 **계열별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단, 인문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소수점 올림 처리), 자연계열은 각 모집단위별 6명 이내, 예·체능계열은 각 모집단위별 3명 이내).
- ▷ 1단계 합격자는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한 후 지원 자격 심사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 분		국어	영어	수학	실기	서류	합계
북한이탈주민	인문계, 자유전공학부	30	30	-	-	40	100
	자연계	30	-	30	-	40	100
	예·체능계	40	-	-	60	-	100

구 분		국어	영어	수학	실기	서류	합계
전 교육과정 이수자	인문계/자연계 자유전공학부	-	-	-	-	100	100
	예·체능계	-	-	-	100	-	100

나. 예·체능계 실기시험 과목

대학	학과(전공)		실기시험 과목	실기시간
이과대학	무용과	한국무용	· 개인작품 · 의상 (전통) - 상의 : V목선 끈나시 검정 레오타드(장식, 레이스, 벨벳 불가) - 하의 : 검정색 전통치마(학교 측 제공) , 발목 있는 핑크색 타이즈 - 슈즈 : 흰색 코슈즈 또는 버선 (창작) - 상의 : V목선 끈나시 검정 레오타드(장식, 레이스, 벨벳 불가) - 하의 : 검정색 풀치마(몽탁 소재, 학교 측 제공) , 발목 있는 핑크색 타이즈 - 슈즈 : 반드시 흰색 코슈즈 착용(버선 착용 불가)	작품시간 3분 이내
		발레	· 개인작품 · 의상 - 상의 : V목선 긴팔 검정 레오타드 (장식, 레이스, 벨벳 불가) - 하의 : 발목 있는 핑크색 타이즈 - 슈즈 : 핑크 토슈즈	
		현대무용	· 개인작품 · 의상 - 상의 : V목선 민소매 검정 레오타드(장식, 레이스, 벨벳 불가) - 하의 : 발목 없는 검정색 타이즈 - 슈즈 : 맨발	
		- 한국무용 살풀이, 승무, 태평무 외의 다른 작품에는 절대 소품 사용을 금합니다. · 승무: 장삼(백색) 허용, 가사 및 고깔 불가 · 살풀이: 수건(백색) 허용 · 태평무: 한삼(백색) 허용 - 머리장식 사용과 화장은 일절 금합니다.		
음악대학	피아노과		총 2곡 · Etude 1곡, 자유곡 1곡	각 5분 내외
	관현악과		자유곡 1곡	15분 내외
	성악과		총 2곡 · 독일가곡 (자유곡) 1곡 - 원어로 암송 · 이태리가곡 (자유곡) 1곡 - 원어로 암송	각 2분 30초 내외
	작곡과		3부형식의 피아노곡쓰기	3시간 이내
미술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연필정밀묘사(4절지)	3시간
	회화과		정물소묘(4절지)	2시간

8. 전형기준

가. 최종합격자는 전형구분 내(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각 계열별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재외국민 내의 계열별(인문, 자연, 예·체능계) 모집인원에 미등락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동일 계열에서 충원하며 계열 내 충원인원이 없을 경우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열 순으로 타 계열에서 충원합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 모집단위 중 약학부에서 합격자의 미등락으로 인하여 모집인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동일 모집단위에서 일정 인원의 충원을 실시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약학부 제외)는 미등락으로 인한 충원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필답시험(국어, 영어, 수학) 및 실기시험 성적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다. 필답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이 우리 대학 선발원칙 전형기준에서 정한 최저학력기준(과목별 과락 및 평균 과락)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필답시험 또는 실기시험 결시자 및 서류미제출자(보완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마. 지원자의 성적이 다른 합격자의 성적보다 현저히 부족한 자, 대학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재외국민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처리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지정된 순위 이하는 우리 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신입생 선발원칙에 따릅니다.

구분	계열	1순위
재외국민	인문계	국어 성적
	자연계	
	예·체능계	실기 성적

사. 전형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전형료

구분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계
재외국민	150,000원	60,000원	210,000원
북한이탈주민	210,000원		210,000원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가. 재외국민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합니다. 1단계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1단계 불합격 시 1단계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다.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한 전형료 또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별첨1]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2025년 3월 기준)

국가	학교명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	웨이하이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대만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한국학교
	젯다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

[별첨2]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업능력 입증서류 견본양식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학업능력 입증서류 표지			
전	형	구	분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고	등	학	교	
				년
		년	월	검정고시 합격
1. 본인은 이 학업능력 입증서류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귀교가 이 학업능력 입증서류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3. 본인은 이 학업능력 입증서류에 허위·고장·사실 기재, 대리 작성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4. 본인은 학업능력 입증서류에 관한 정보의 열람,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에도 이에 관한 정보의 열람, 공개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_____ (서명)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목록]			
번호	입증 서류명	입증서류 관련정보 (웹사이트 주소, ID, Password 필수 포함)	페이지 (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입증서류는 표지 1매 포함 A4용지 2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저장.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파일 업로드. 추후 최종등록 시 우편으로 입증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할 것 - 서명 부분 외 다른 모든 작성란은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할 것			

[별첨3] 사유서 견본양식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사 유 서			
전 형 구 분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성 명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지원자에 해당하는 구분값 체크 후 상세내용을 하단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구분	☐ 학기결손/중복	☐ 월반	☐ 휴학	☐ 조기졸업	☐ 출입국사실	☐ 기타

견본양식

원본양식은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출력
위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_____ (서명)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사유서 제출 방법]

-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본 사유서(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합니다. 추후 최종등록 시 우편으로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 COVID-19, 개명, 입학원서와 제출서류 상 이름이 다른 경우 및 기타 사항은 세부사항 중 기타 항목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약 20분 내외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로 나와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도보 약 20분 내외

[6호선] 효창공원앞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약 20분 내외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4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약 20분 내외

지하철 역 주변 버스

[1호선 남영역 부근] 162, 262, 503, 505, 1711, 7016, 용산04

[4호선 숙대입구역 부근] 100, 150, 151, 152, 162, 421, 500, 501, 502, 504, 506, 507, 605, 750A, 750B, 751, 752, 1711, 7016, 공항6001

[6호선 효창공원앞역 부근] 110A, 400, 740, 0411

[숙명여대 정/후문 하차] 400, 0411, 용산04

* 버스 노선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안내

- 전화상담 전화 : 02-710-9920 팩스 : 02-710-9098
- 주 소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정보센터(행정관1층)
- 홈페이지 <http://admission.sookmyung.ac.kr>
- 전자우편 ipak@sm.ac.kr